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2.11.2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11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2년 11월 27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선우근

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「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시행지침('11.9.30.)」 및 「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('12.11.1.)」이 시달되어 우리구로 확정 통보된 5명의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(1)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5명 정원 순증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을 당초 1,240명에서 5명 증가한 1,245명으로 하고, 이에 따른 마포구 정원 총수 또한 1,269명에서 1,274명으로 개정함.
- (2) 안 제4조 별표3에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정원 순증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정원을 조정함.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「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」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증원하고자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도 저촉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 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